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81
------------	-------

발의연월일 : 2023. 4. 14.

발의자 : 최연숙 · 조은희 · 김용판

金炳旭 · 이인선 · 장동혁

유경준 · 이태규 · 권은희

허은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력이 소멸되는 독성치료(난소 또는 고환에 독성이 있는 치료) 또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과 같은 치료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의 동결 · 보존을 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임.

2022년 한해 건강보험 심사결정분 기준 난소 또는 고환 절제 수술로 불임이 되는 인원이 20대가 4,964명, 30대가 7,087명, 40대가 10,592명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한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도 현재는 아니지만 장래에 임신을 원할 때 ‘가임력 보전’을 위해 채취한 생식세포의 동결 · 보존 등의 비용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생식력이 소멸되는 의료행위를 통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그 의료행위 전 ‘가임력 보전’을 위해 채취한 정자 · 난자

의 동결·보존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7 신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영구적으로 불임이 예상 되는 사람들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 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 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영구적으로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 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 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